
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

본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 편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확정, 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2018. 03.

금오공과대학교 입학관리본부

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인원		모 집 단 위	학과 및 전공(과)	최대 모집 가능 인원 (모집단위별 10%)	
1)입학정원의 2% 범위	2)입학정원 제한없음				
24명 이내		기계공학과		8	
		기계설계공학과		4	
		기계시스템공학과		12	
		전자공학부	정보전자전공		20
			제어및로봇전공		
			전자통신전공		
			전자및전파전공		
			전자IT융합전공		
		건축학부	건축학전공(5년제)		4
			건축공학전공		
		산업공학부	산업경영공학전공		7
			디자인공학전공		
		신소재공학부			11
		화학소재융합공학부	고분자공학전공		16
			소재디자인공학전공		
			환경공학전공		
			응용화학전공		
화학공학전공					
토목공학과			4		
컴퓨터공학과			9		
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			5		
광시스템공학과			3		
메디컬IT융합공학과			3		
응용수학과			3		
경영학과			4		
총 계				113	

- 1) 입학정원의 2% 범위 : 총 24명(입학정원의 2%)이내 모집하되, 학부(과)별 입학정원의 10%이내에서 선발
 ☞ 교포자녀/ 해외근무 공무원자녀/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/ 외국정부 .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/ 유치과학자
 교수요원자녀/외국국적취득 외국인
- 2) 입학정원 제한 없음 : 전 교육과정 이수자(재외국민/외국인), 북한이탈주민,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

구분	자격구분	자격요건	최저 해외 재학/거주/체류기간						공통학력요건		
			학생			보호자		배우자			
			재학	거주	체류	근무	거주	체류		거주	체류
정원 외 모집 (입학 정원의 2% 이내)	교포자녀	(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)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	2년	2년	2년	-	2년	2년	2년	2년	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(4학기)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(단,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는 5년 이상)로서, 국내·외 소재 고교 졸업(예정)자
		(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)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교포의 자녀	5년	5년	5년	-	5년	5년	5년	5년	
	해외근무 공무원 자녀	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	2년	2년	2년	2년	2년	2년	-	-	
	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	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	2년	2년	2년	2년	2년	2년	-	-	
	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	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	2년	2년	2년	2년	2년	2년	-	-	
	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	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	2년	2년	2년	2년	2년	2년	-	-	
외국국적 취득 외국인	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	2년	2년	2년	-	-	-	-	-	외국 소재 고교,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(외국인 학교)로 전학한 졸업(예정)자	
정원 외 모집 (입학 정원 제한 없음)	전교육과정 이수자	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	초, 중, 고 전 교육과정기간			-	-	-	-	-	외국소재 고교 졸업(예정)자
	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자	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결혼 이주자	초, 중, 고 전 교육과정기간			-	-	-	-	-	
	북한이탈주민	'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'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	통일부 확인			-	-	-	-	-	국내·외 소재 고교 졸업(예정)자

□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의 범위

1. 재외국민

가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,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자

나. 교포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, 외국에서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고 현재 영주하는 자

2. 외국인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복수국적자 .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

3. 북한이탈주민 : 『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』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

4.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자 :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자

□ 해외파견근무자의 범위

1. 공무원 :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

2. 상사직원

가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

나.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(또는 해외사무소)의 임직원

다.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(또는 해외사무소)의 임직원(설치인증 ·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·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)

라. 외국환은행(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· 금융기관 포함)의 임직원

마. 정부파견의사, 언론기관특파원

3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

가. 외국정부 :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(단, 기타 국가기관, 지방정부, 국영기업체는 제외)

나. 국제기구 : 정부 간의 국제조약·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(단,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)

4.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: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

5.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: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(교육 . 연수 .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)

□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기준

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 인정

1.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가. 2개국 이상에서 이수한 자에 한해 지역간 학제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(6개월)이내에서 인정

나.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

2.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

- 가. 1개국에서 초·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년제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
- 나. 2개국 이상에서 초·중등 과정을 이수한 경우
 - 1) 11학년제 이하 : 12학년제 기준으로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
 - 2) 12학년제 : 초·중등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
 - 3) 13학년제 이상 : 10 ~ 12학년 또는 11 ~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

□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

1. 외국학교의 인정기준

- 가.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(다만, 부모 근무국의 지역·종교·공산권<이데올로기>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)
- 나. 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만 인정(유아원, 유치원,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)
- 다.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

2.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외국의 교육과정

초등학교과정	중학교과정	고등학교과정
1 ~ 6학년	7 ~ 9학년	10 ~ 12학년

3. 고등학교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: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. 단,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(일본 등)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

4. 재학기간 인정기준

- 가.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
 - 1)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
- 나.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
 - 1)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(2년 전체) 또는 고등학교 과정(1년)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
 - 2) 단, 출·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
 - 3)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'외국학교 재학기간'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의미

5.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인정 범위

- 가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기준의 1, 2 중 하나를 만족
- 나. 국내 학교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불인정

□ 해외 영주·거주·체류·근무기간의 정의

- 1. 보호자가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
- 2. 해외 재학기간을 충족한 후 국내 검정고시로 고교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함(단, 국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)
- 3. 학제 차이로 인해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이나 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(1개 학기)까지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함
- 4. 해외영주(거주), 근무,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부분만 입학 자격으로 인정함
 - 가. 해외거주기간 :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

- 나. 해외체류기간 :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
- 다. 방학 등 학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 및 업무상 일시 귀국한 경우는 해외거주(체류) 기간으로 인정)
- 라. 해외영주기간 :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
- 미. 해외근무기간 : 증명서(재직 및 경력증명서) 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근무기간

□ 외국인의 최저학력기준

- 한국어 : 원서접수 시 TOPIK 3급 이상 취득 또는 우리대학 한국어학원의 어학시험 3급 이상 합격자
- ※ 입학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하는 것을 권장

IV 제출 서류

구 분 제출서류	교포 자녀	해외근무 공무원 자녀	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	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자녀	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	외국국적 취득 외국인	전 교육과정 이수자	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	북한이탈 주민
개인정보 수집 . 이용 동의서 (본교서식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입학원서(본교서식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지원자 종합기록표(본교서식)	●	●	●	●	●		● (재외국민)	●	●
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초 . 중 .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(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-
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	●	●	●	●	●	●	● (재외국민)	●	-
출입국사실증명서	● (부,모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학생)	● (재외국민)	-	-
재외국민등록부등본	● (부,모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● (보호자,학생)	-	● (재외국민)	-	-
제3국 수학인정서	-	▲	▲	▲	▲	-	-	-	-
영주권사본	● (부,모,학생)	-	-	-	-	-	-	-	-
보호자재직증명서 (외국근무기간 기재)	-	●	●	●	●	-	-	-	-
해외지사 설치인증 . 허가서 또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(승인)서	-	-	●	-	-	-	-	-	-

구 분 제출서류	교포 자녀	해외근무 공무원 자녀	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	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자녀	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	외국국적 취득 외국인	전 교육과정 이수자	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	북한이탈 주민
외국인 등록증 사본	-	-	-	-	-	●	● (외국인)	-	-
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(호구부)	-	-	-	-	-	-	● (외국인)	-	-
국적상실 확인증명서(주민등록 호(제)적 등본 등)	-	-	-	-	-	●	-	-	-
은행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송금 (환전)증명서	-	-	-	-	-	-	● (외국인)	-	-
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	-	-	-	-	-	-	▲	-	-
재정보증인의 수입증명서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	-	-	-	-	-	-	▲	-	-
여권사본	-	-	-	-	-	-	● (학생)	-	-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시 . 군 . 구청 발급)	-	-	-	-	-	-	-	-	●
학력인정증명서(시.도교육청 발급),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	-	-	-	-	-	-	-	-	●
언어능력시험성적표	-	-	-	-	-	-	● (외국인)	-	-
자기소개서(본교서식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-
학업계획서(본교서식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-
학력조회 동의서(본교서식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-
학력조회 요청서(본교서식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▲ (등록후)	-

(● : 제출, ▲ : 해당자 제출, - : 미제출)